

부록 2
품목별 원산지 기준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명	원산지부여기준
제1부 - 산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1	제1류		산 동물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2	제2류		육과 식용설육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3		03.01	활어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4		03.02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5		03.03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03.04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잘게 썰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 신선 또는 냉장한 것	
6		0304.11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7		0304.12	-- 이빨고기(디소스티처스종)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8		0304.19	-- 기타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 냉동한 피레트	
9		0304.21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0		0304.22	-- 이빨고기(디소스티처스종)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1		0304.29	-- 기타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 기타	
12		0304.91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3		0304.92	-- 이빨고기(디소스티처스종)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4		0304.99	-- 기타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03.05	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훈제한 것에 있어서는 훈제과정 또는 훈제이전에 열로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어류의 분·조분·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15		0305.10	- 어류의 분·조분·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6		0305.20	- 어류의 간장과 어란(건조·훈제·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7		0305.30	- 어류의 피레트, 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 훈제한 어류, 피레트를 포함한다	
18		0305.41	-- 태평양연어(양코링쿠스 넬카·양코링쿠스 고르부스카·양코링쿠스 케타·양코링쿠스 차비차·양코링쿠스 키수츠·양코링쿠스 마소 및 양코링쿠스 로두루스), 대서양 연어(살모살라) 및 다뉴브 연어(후코후코)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9		0305.42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클루페아 팔라시)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20		0305.49	-- 기타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 건조한 어류, 염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훈제한 것을 제외한다.	
21		0305.51	-- 대구(가두스 모르화·가두스 오각·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22		0305.59	-- 기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 염장한 어류(건조 또는 훈제한 것을 제외한다) 및 염수장한 어류	
23		0305.61	-- 청어(클루페아하렌구스·클루페아팔라시)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24		0305.62	-- 대구(가두스 모르화·가두스 오각·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25		0305.63	-- 멸치(엔그로리스 종)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26		0305.69	-- 기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03.06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하고,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및 갑각류의 분·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 냉동한 것	
27		0306.11	-- 닭새우류(팔리누스종·피누리루스종·자수스종)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28		0306.12	-- 바다가재(호마루스종)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29		0306.13	-- 새우와 보리새우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30		0306.14	-- 계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31		0306.19	-- 기타[분·조분 및 펠리트를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 냉동하지 아니한 것	
32		0306.21	-- 닭새우류(팔리누루스종·파누리루스종·자수스종)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33		0306.22	-- 바다가재(호마루스종)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34		0306.23	-- 새우와 보리새우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35		0306.24	-- 계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36		0306.29	-- 기타[분·조분 및 펠리트를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03.07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을 제외하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및 갑각류 외의 수생무척추동물의 분·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에 한한다]	
37		0307.10	- 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 가리비과의 조개(펙텐·클라미스 또는 프라코펙텐속의 것으로서 여왕가리비과 조개를 포함한다)	
38		0307.21	--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39		0307.29	-- 기타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 홍합(미틸루스종·페르나종)	
40		0307.31	--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41		0307.39	-- 기타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 갑오징어(세피아 오피시날리 로시아마크로소마·세피올라종)와 오징어(움마스트레페스종·로리고종·노토토다루스종·세피오투디스종)	
42		0307.41	--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43		0307.49	-- 기타 - 문어(옥토푸스종)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44		0307.51	--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45		0307.59	-- 기타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46		0307.60	- 달팽이(바다달팽이를 제외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 기타[갑각류 외의 수생무척추동물의 분·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47		0307.91	--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48		0307.99	-- 기타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제4류		낙농품·조란·천연꿀 및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04.01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9		0401.10	-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 이하의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50		0401.20	-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 100분의 6이하의 것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51		0401.30	-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6을 초과하는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52		04.02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45%이상인 것.
53		04.03	버터밀크·응고유와 응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와 기타의 발효 또는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거나, 향 또는 과일 및 견과류나 코코아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04.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비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우유 성분이 총 우유 성분의 50% 이하여야 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45%이상인 것.
		04.04	유장(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조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4		0404.10	- 유장과 변성유장(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45%인 것.
55		0404.90	- 기타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56		04.05		버터 및 기타의 지와 유(밀크에서 얻어진 것에 한한다), 데어리스프레드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04.06		치즈와 커드	
57			0406.10	- 신선한(숙성되지 아니한 것 또는 처리하지 아니한 것) 치즈(유장치즈를 포함한다)와 커드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58			0406.20	- 갈았거나 분상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59			0406.30	- 가공치즈(갈았거나 분상의 것을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0406.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비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우유 성분이 총 우유 성분의 50% 이하여야 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동 상품 FOB가격의 45% 이상인 것
60			0406.40	- 블루바인 치즈와 페니실리움 로우크포티로 생산된 바인을 함유한 기타 치즈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61			0406.90	- 기타 치즈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62		04.07		조란(겉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처리 또는 조리한 것에 한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63		04.08		조란(겉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황(신선한 것, 건조한 것, 물에 삶았거나 찢 것, 성형한 것, 냉동한 것 또는 기타의 저장처리를 한 것에 한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64		04.09		천연꿀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65		04.10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66	제5류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제2부 - 식물성 생산품					
67	제 6류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인경·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절화 와 장식용의 잎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68	제 7류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제 8류			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와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08.01		코코넛·브라질넛 및 캐슈넛(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 코코넛	
69			0801.11	-- 말린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70			0801.19	-- 기타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 브라질넛	
71		0801.21	-- 탈각하지 아니한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72		0801.22	-- 탈각한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 캐슈넛	
73		0801.31	- 탈각하지 아니한 것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74		0801.32	-- 탈각한 것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75	08.02		기타의 견과류(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76	08.03		바나나(플랜틴을 포함하며, 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08.04		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애버카도우·과아버·망고 및 망고스틴(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77		0804.10	- 대추야자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78		0804.20	- 무화과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79		0804.30	- 파인애플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80		0804.40	- 애버카도우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81		0804.50	- 과아버·망고 및 망고스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82	08.05		감귤류의 과일(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83	08.06		포도(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84	08.07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우(과파야)(신선한 것에 한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85	08.08		사과·배 및 마르멜로(신선한 것에 한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86	08.09		살구·비찌·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자두 및 슬로우(신선한 것에 한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87	08.10		기타 과일(신선한 것에 한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88	08.11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찐 것에 한하며,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89	08.12		일시 저장처리한 과실과 견과류(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탄수 또는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 저장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8.13		건조한 과실(제0801호 및 제080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이 류의 건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90		0813.10	- 살구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91		0813.20	- 프룬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92		0813.30	- 사과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93		0813.40	- 기타 과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94		0813.50	- 이 류의 건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95	08.14		감귤류의 껍질과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신선, 냉동, 건조 또는 염수·유황수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 저장처리한 것에 한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제 9류		커피·차·마태 및 향신료	
	09.01		커피(볶은 것인지 또는 카페인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커피의 각과 피 및 커피를 함유한 커피대용물	
			- 커피(볶지 아니한 것)	
96		0901.11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97		0901.12	-- 카페인을 제거한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FOB가격의 45%이상일 것
			- 커피(볶은 것)	
98		0901.21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45%이상일 것.
99		0901.22	-- 카페인을 제거한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45%이상일 것.
100		0901.90	- 기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이상일 것
101	09.02		차류(가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02	09.03		마태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09.04		후추(파이퍼속의 것) 및 고추류(건조,파쇄 또는 분쇄한 캡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	
			- 후추	
103		0904.11	--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04		0904.12	-- 파쇄 또는 분쇄한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이상일 것
105		0904.20	- 고추류(건조,파쇄 또는 분쇄한 캡시컴속과 피멘타속의 열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06		09.05		바닐라두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09.06		계피와 계피나무의 꽃	
				-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것	
107			0906.11	-- 계피(신나모뎀 제이나이쿰 블룸)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08			0906.19	-- 기타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09			0906.20	-- 파쇄 또는 분쇄한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110		09.07		정향(과실·꽃 및 화경에 한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11		09.08		육두구·메이스 및 소두구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12		09.09		아니스·대회향·회향·코리앤더·커민 또는 캐러웨이의 씨와 주니퍼의 열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09.10		생강·샤프란·심황(강황)·타임·월계수의 잎·카레 및 기타 향신료	
113			0910.10	- 생강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14			0910.20	- 샤프란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15			0910.30	- 심황(강황)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 기타 향신료	
116			0910.91	-- 혼합물(제9류의 주 제1호나목의 것만 해당한다)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117			0910.99	-- 기타	가. 타임 및 월계수의 잎 :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나. 기타 :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118	제 10류			곡물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제 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119		11.01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 제 11.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1.02		곡분(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를 제외한다)	
120			1102.10	- 호밀가루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21			1102.20	- 옥수수가루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22			1102.90	- 기타	가. 쌀가루 :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 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나.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10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10.03호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가 어느 당사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10.03호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11.03		곡물의 분쇄물·조분 및 펠리트	
				- 분쇄물 및 조분	
123			1103.11	-- 밀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103.11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40%이상인 것
124			1103.13	-- 옥수수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103.1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40%이상인 것
125			1103.19	-- 기타 곡물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103.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10.03호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10.03호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126			1103.20	- 펠리트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103.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10.03호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10.03호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11.04		기타 가공한 곡물[예: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뿔은 것(제1006호의 쌀을 제외한다)]과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	

			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	
			- 압착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	
127		1104.12	-- 귀리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1104.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128		1104.19	-- 기타 곡물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1104.19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10.03호 및 제 10.06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10.03호 및 제 1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 기타 가공곡물(예:껍질을 벗긴 것·진주상의 것·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빵은 것)	
129		1104.22	-- 귀리의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30		1104.23	-- 옥수수의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31		1104.29	-- 기타 곡물의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32		1104.30	- 곡물의 배아(원상의 것·압축한 것·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1.05		감자의 분·조분·분말·플레이크·입 및 펠리트	
133		1105.10	- 분·조분과 분말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1105.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134		1105.20	- 플레이크·입(粒) 및 펠리트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35	11.06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 사교·뿌리 또는 괴경(제0714호의 것)과 제8류 물품의 분·조분과 분말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11.06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11.07		맥아(볶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36		1107.10	- 볶지 아니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1107.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37		1107.20	- 볶은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38	11.08		전분과 이눌린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11.08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139		11.09		밀의 글루텐(건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40	제 12류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일, 각종의 종자와 과일,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제 13류			락·검·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액즙과 엑스	
141		13.01		락과 천연검·수지·검수지 및 올레오레진(예:발삼)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3.02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식물성 수액과 엑스	
142			1302.11	-- 아편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43			1302.12	-- 감초의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44			1302.13	-- 호프의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45			1302.19	-- 기타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46			1302.20	- 펙틴질·펙티닝산염 및 펙틴산염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47			1302.31	-- 한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 가격의 70%이상인 것
148			1302.32	-- 로우커스트두·로우커스트두의 씨 또는 구아의 씨로부터 얻은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49			1302.39	-- 기타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50	제 14류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식품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제3부 -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 납					
	제 15류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15.15		기타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호호버유를 포함한다)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		1515.50	- 참기름과 그 분획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1515.5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 12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 12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15.17	마가린 및 이 류의 동·식물성 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것을 제외한다)	
152		1517.10	- 마가린(액상마가린을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1517.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153		1517.90	- 기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154		15.18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끓이거나 산화·탈수·황화·취입·진공 또는 불활성 가스 하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기타 화학적 변성을 한 것에 한하며, 제 1516호의 해당품을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 또는 이 류의 다른 유지의 분획물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5.1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제4부 - 조제식료품과 음료·알콜·식초 및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제 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155		16.01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육·설육 또는 피로 조제한 것에 한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계로 한 조제식료품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16.02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설육 또는 피	
156		1602.20	- 동물간장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1602.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 1류, 제 2류 및 제 5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 이상인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수출

				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 가금류의 것(제0105호의 것에 한한다)	
157		1602.31	-- 칠면조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1602.3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 1류, 제 2류 및 제 5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 이상인 것, 다만 제 1류, 제 2류 및 제 5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158		1602.32	-- 닭의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60%이상인 것, 다만 제 1류, 제 2류 및 제 5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159		1602.39	--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1602.3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 1류, 제 2류 및 제 5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 이상인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 돼지의 것	
160		1602.41	-- 넓적다리살과 그 절단육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161		1602.42	-- 어깨살과 그 절단육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1602.42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 이상인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162		1602.49	--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1602.49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 이상인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163			1602.50	- 소의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164			1602.90	- 기타(동물의 피 조제품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1602.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 1류, 제 2류 및 제 5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 이상인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16.04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및 캐비아와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 어류(원상 또는 조각으로 한 것에 한하며, 잘게 다진 것은 제외한다)	
165			1604.11	-- 연어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1604.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166			1604.12	-- 청어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167			1604.13	-- 정어리·사르디넬라·브리스팅 또는 스프릿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168			1604.15	-- 고등어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169			1604.16	-- 멸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1604.16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 3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다만 제 3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170			1604.19	--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1604.19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171			1604.20	-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1604.2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

				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172		1604.30	- 캐비아와 캐비아 대용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1604.3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 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16.05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연 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173		1605.10	- 계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 FOB가 가격의 35%이상인 것.
174		1605.20	- 새우와 보리새우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 FOB가 가격의 35%이상인 것.
175		1605.30	- 바다가재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1605.3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 경된 것, 다만 제 3류에 해당하는 물 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 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 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 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 3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 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176		1605.40	- 기타 갑각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1605.4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 3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 3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177		1605.90	-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1605.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 3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 3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제 19류		곡물·분·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 품과 베이커리 제품	
		19.01	맥아엑스와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코 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	

				분의 40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및 제0401호 및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178			1901.10	- 유아용의 조제식료품(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901.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0401호에서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 상품인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0401호에서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 상품에 한한다.
179			1901.20	-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901.2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 상품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 상품에 한한다.
180			1901.90	- 기타	한국의 HS 제1901.90.200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어느 당사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 다른 소호에 대해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90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0401호에서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 상품인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FOB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0401호에서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 상품인 것에 한한다.
		19.04		콘플레이크 기타 이와 유사한 조	

			제식료품(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것에 한한다)과 낱알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 및 기타 가공한 곡물(분·분쇄물 및 조분을 제외하고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계기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81		1904.90	- 기타	한국의 HS 제1904.90.1010호, 제1904.90.109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1904.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비원산지 재료가 당해 상품의 소호에서 다른 소호로 제공되지 않은 한 최소허용기준은 당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비원산지 재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는 역내 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다른 소호에 대해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904.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19.05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시일링웨이퍼·라이스페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 스위트 비스킷 및 와플과 웨이퍼	
182		1905.31	-- 스위트 비스킷	다른 류에 해당하는 제 1905.3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183		1905.32	-- 와플과 웨이퍼	다른 류에 해당하는 제 1905.32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184		1905.90	-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제 1905.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 20류		채소·과실·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20.03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버섯과 송로(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185			2003.90	-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00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60%이상인 것
		20.05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며, 냉동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고, 제2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 기타 채소(채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186			2005.91	-- 죽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187			2005.99	-- 기타	한국의HS 제2005.99.1000호에 대해서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60%이상인 것에 한한다. 다른 소호에 대해서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것에 한한다.
188		20.06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과피 및 식물의 기타 부분(드레인한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20.08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견과류·낙화생 기타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89			2008.11	-- 낙화생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다만 제 12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190			2008.19	--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008.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0802.31호, 제0802.32호, 제0802.40호 및 제080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0802.31호, 제0802.32호, 제0802.40호 및 제080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191		2008.20	- 파인애플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2008.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 8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 8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 기타(혼합물을 포함하나 제 2008.19호의 혼합물을 제외한다)	
192		2008.92	-- 혼합물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2008.92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193		2008.99	--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2008.99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0.09	과실쥬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쥬스(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하며, 발효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정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파인애플쥬스	
194		2009.41	--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2009.4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 8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195		2009.49	--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2009.49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 8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196		2009.80	- 기타 단일의 과실 또는 채소의 쥬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2009.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197		2009.90	- 혼합쥬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2009.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 21류		각종의 조제식료품	
		21.01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198			2101.20	- 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과 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101.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09.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 09.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21.03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	
199			2103.90	- 기타	한국의HS 제 2103.90.1030호, 제 2103.90.9030호, 제 2103.90.9090호에 대해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10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 7류, 및 제 9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 7류 및 제 9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다른 소호에 대해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103.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21.06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품	
200			2106.90	- 기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1211.20호, 제1212.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제 22류			음료·알콜 및 식초	
		22.02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일쥬스와 채소쥬스를 제외한다)	
201			2202.10	-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일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	
202			2202.90	- 기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 1211.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203		22.03		맥주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2.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2.04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에 한하며, 알콜로 강화시킨 포도주를 포함한다) 및 포도즙(제2009호의 것을 제외한다)	
				- 기타 포도주와 포도즙(알콜첨가에 의하여 발효를 중지한 것에 한한다)	
204			2204.21	-- 2리터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2204.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05			2204.29	--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2204.29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2.08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알콜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에 한한다), 증류주·리큐르 기타 주정음료	
206			2208.20	- 포도주 또는 포도즙을 짜낸 찌꺼기에서 얻은 증류주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2208.2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07			2208.30	- 위스키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2208.3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08			2208.70	- 리큐르류 및 코디얼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 1211.20호 및 제 1302.19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제 23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23.01		육·설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분·	

				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수지박	
209			2301.20	-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 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분·조분 및 펠리트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2301.2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 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3.06	오일 -케이크 및 기타 고품의 유 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 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2304호 또는 제2305호의 것을 제외한 식물성 유지의 추출시에 생기는 것에 한한다)	
210			2306.50	- 야자 또는 코프라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2306.5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 경된 것, 다만, 제 8류에 해당하는 물 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 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 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 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 만, 제 8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 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 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211			23.08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 이스트·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 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3.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 8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 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 8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23.09	사료용 조제품	
212			2309.90	- 기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 격의 40%이상일 것
			제 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213			24.01	잎담배 및 담배 부산물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24.02	시가·셔루트·시가렐로 및 권련 (담배 또는 담배대용물의 것에 한한다)	
214			2402.20	- 권련(담배를 함유한 것에 한한 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402.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 된 것, 다만 제 24.03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FOB가격 의 60%를 넘지 않는 것에 한한다.
제5부 - 광물성 생산품					
			제 29류	유기화합품	
			29.21	아민관능화합물	
				- 비환식폴리아민과 그들의 유도	

			체 및 이들의 염	
215		2921.21	-- 에틸렌디아민과 그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2921.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16		2921.29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2921.29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9.22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 아미노알콜(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에 한한다), 그들의 에테르와 에스테르 및 그들의 염	
217		2922.12	-- 디에탄올아민과 그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2922.12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18		2922.13	-- 트리에탄올아민과 그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2922.13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 아미노산(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에 한한다) 과 그 에스테르 및 그들의 염	
219		2922.41	-- 리신과 그 에스테르 및 그들의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2922.4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9.23	제4암모늄염과 수산화 제4암모늄 및 레시틴과 기타 포스포아미노리피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20		2923.90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2923.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 33류		정유와 레지노이드 및 조제향료와 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	
		33.01	정유(콘크리트와 앵실루트의 것을 포함하며, 테르펜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레지노이드, 추출한 올레오레진, 정유의 콘센트레이트(냉흡수법 또는 온침법에 의하여 얻어진 것으로서 유지·불휘발성유·왁스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을 매질로 한 것에 한한다), 정유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및 정유의 에큐어스디스틸레이트와 에큐어스솔루션	
221		3301.30	- 레지노이드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3301.3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222		3301.90	-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330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 된 것, 다만, 제1211.20호 및 제 1302.19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 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 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 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1211.20호 및 제 1302.19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 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제7부 - 플라스틱과 그제품 및 고무와 그제품				
제 40류			고무와 그 제품	
	40.11		고무제의 공기타이어(신품에 한 한다)	
223		4011.10	- 승용자동차용의 것(스테이션 웨곤과 경주자동차용의 것을 포 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4011.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 된 것, 다만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 품의 FOB 가격의 55%이상인 것에 한한다.
224		4011.20	- 버스용 및 화물차용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4011.2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 경된 것, 다만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55%이상인 것 에 한한다.
225		4011.40	- 모터사이클용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4011.4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 경된 것, 다만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55%이상인 것 에 한한다.
제8부 - 원피 · 가죽 · 모피 및 이들의 제품 · 마구 · 여행용구 · 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 와 동물거트				
제 42류			가죽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의 거 트(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의 제 품	
	42.03		의류와 의류부속품(가죽제 또는 컴포지션레더제의 것에 한한다)	
			- 장갑류	
226		4203.21	-- 운동용으로 특수디자인 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4203.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 경된 것
제11부 -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제 50류			견	
227		50.01	누에고치(생사를 뽑는데 적합한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0.01호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 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28		50.02	생사(폰 것을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0.02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29		50.03	견웨이스트(생사를 뽑는데 적합하지 아니한 누에고치·사웨이스트 및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0.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30		50.04	견사(견웨이스트로 만든 견방사와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0.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31		50.05	견방사(견웨이스트의 것에 한하며,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0.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32		50.06	견사·견방사(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및 누에의 거트		제50.04호에서 제50.05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33		50.07	견직물(견웨이스트의 것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50.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적어도 두 공경 이상의 예비 또는 마감공정을 수반하여 날염이나 염색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 51류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마모사 및 이들의 직물		
234		51.01	양모(카드 또는 코옴한 것을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1.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35		51.02	섬수모 또는 조수모(카드 또는 코옴한 것을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1.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36		51.03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의 웨이스트(실의 웨이스트를 포함하며, 가아넷스톡을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1.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37		51.04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의 가아넷스톡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1.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38		51.05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카드 또는 코옴한 것에 한하며, 코옴한 단편상의 양모를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1.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39		51.06	카드한 양모사(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1.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40		51.07	코옴한 양모사(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51.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41		51.08	섬수모사(카드 또는 코옴한 것에 한하며,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51.08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42		51.09	양모사 또는 섬수모사(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제51.06호에서 제51.08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51.09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43		51.10	조수모사 또는 마모사(집프한 마모사를 포함하며, 소매용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51.1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44		51.11	직물(카드한 양모 또는 섬수모의 것에 한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51.1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적어도 두 공정 이상의 예비 또는 마감공정을 수반하여 날염이나 염색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45		51.12	직물(코옴한 양모 또는 섬수모의 것에 한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51.12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적어도 두 공정 이상의 예비 또는 마감공정을 수반하여 날염이나 염색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46		51.13	직물(조수모 또는 마모의 것에 한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51.13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적어도 두 공정 이상의 예비 또는 마감공정을 수반하여 날염이나 염색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제 52류		면	
247		52.01	면(카드 또는 코옴한 것을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2.0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48		52.02	면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 넷스투를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2.02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49		52.03	면(카드 또는 코옴한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2.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50		52.04	면 재봉사(소매용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52.04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51	52.05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인 것에 한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52.05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52	52.06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미만인 것에 한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52.06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53	52.07	면사(재봉사를 제외하며 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제 52.04호에서 제52.06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52.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 53류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와 지사 및 지사의 직물		
254	53.01	아마(생 것이거나 또는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아마의 토우 및 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3.0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255	53.02	대마(생 것이거나 또는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대마의 토우 및 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3.02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56	53.03	황마와 기타의 방직용 인피섬유(아마·대마·라미를 제외하며, 생 것이거나 또는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이들 섬유의 토우와 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3.03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57	53.05	코코넛, 아바카(마닐라마), 라미와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다른 호에 계기되거나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며, 생 것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방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및 이들의 토우·노일 및 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3.05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58	53.06	아마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3.06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59	53.07	제5303호의 황마 또는 기타 방직용 인피섬유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53.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60		53.08		기타 식물성 섬유사와 지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53.08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61		53.09		아마직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53.09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적어도 두 공정 이상의 예비 또는 마감공정을 수반하여 날염이나 염색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62		53.10		제5303호의 황마 또는 기타 방직용 인피섬유의 직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53.1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적어도 두 공정 이상의 예비 또는 마감공정을 수반하여 날염이나 염색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63		53.11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지사의 직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53.1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적어도 두 공정 이상의 예비 또는 마감공정을 수반하여 날염이나 염색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 54류				인조필라멘트	
264		54.01		인조필라멘트의 재봉사(소매용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4.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65		54.02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을 제외하며, 67데시텍스미만의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4.02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66		54.03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 및 소매용의 것을 제외하며, 67데시텍스미만의 재생 또는 반합성의 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4.03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67		54.04		합성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이상의 것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밀리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및 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예:인조스트로) (시폭이 5밀리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4.04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68		54.05		재생 또는 반합성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밀리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및 재생 또는 반합성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예:인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4.05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조스트로)(시폭이 5밀리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269	54.06		인조필라멘트사(재봉사를 제외하며, 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4.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 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270	55.01		합성필라멘트토우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5.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71	55.02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토우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5.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72	55.03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5.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73	55.04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5.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74	55.05		인조섬유의 웨이스트(노일·사웨이스트 및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5.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75	55.06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5.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76	55.07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5.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77	55.08		인조스테이플섬유의 재봉사(소매용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5.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78	55.09		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 및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5.0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79	55.10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 및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55.1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80	55.11		인조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를 제외하며, 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제 55.08호에서 제55.10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55.1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 56류			위딩·펠트 및 부직포·특수사·끈·코디지·로프 및 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281		56.01		방직용 섬유의 위딩과 그 제품 [예:방직용 섬유로서 길이가 5밀리미터이하인 것(플록),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와 밀네프]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6.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82		56.02		펠트(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6.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83		56.03		부직포(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6.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84		56.04		고무사 및 고무코드(방직용 섬유제로 피복한 것에 한한다), 방직용 섬유사, 제5404호 또는 제5405호의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시드한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6.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85		56.05		금속드리사(짐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방직용 섬유사, 제5404호 또는 제5405호의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사·스트립·분상으로 금속과 결합한 것 또는 금속을 피복한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6.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86		56.06		짐프사와 제5404호 또는 제5405호에 계기한 스트립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짐프한 것에 한하며 제5605호의 것 및 짐프한 마모사를 제외한다), 셔닐사(플록상의 셔닐사를 포함한다) 및 루프웨일사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6.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87		56.07		끈·코디지·로프 및 케이블(엮은 것인지 또는 짠 것인지의 여부와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침투·도포·피복 및 시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6.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88		56.08		결절한 망지(끈·코디지 또는 로프로 만든 것에 한한다)와 방직용 섬유제의 제품으로 된 어망 및 기타의 제품으로 된 망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6.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89		56.09		제5404호 또는 제5405호의 실·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끈·코디지·로프 및 케이블의 제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6.0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품(다른 호에 계기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제 57류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갈개	
290		57.01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갈개(결절한 것에 한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7.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91		57.02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갈개(직조한 것에 한하며, 터후트 또는 플록한 것을 제외하고 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켈렘·슈맥·카라미니 및 이와 유사한 수직으로 된 러그를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7.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92		57.03	양탄자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갈개(터후트한 것에 한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7.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93		57.04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갈개(펠트제의 것에 한하며, 터후트 및 플록한 것을 제외하고 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7.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94		57.05	기타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갈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7.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 58류		특수직물, 터후트한 섬유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과 자수포	
295		58.01	파일직물·셔닐직물(제5802호 또는 제5806호에 해당하는 직물을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8.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96		58.02	테리타올지 및 이와 유사한 테리직물(제5806호에 해당하는 세폭직물을 제외한다)과 터후트직물(제5703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8.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97		58.03	거즈(제5806호에 해당하는 세폭직물을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8.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98		58.04	튜올 및 기타의 망직물(제직한 것, 메리야스 편직 또는 뜨개질 편직한 것을 제외한다)과 레이스(원단상, 스트립 또는 모티프로 된 것에 한하며 제6002호 및 제6006호의 편물을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8.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99		58.05	고우벌린직·플란더스직·오버션직·뷰바이스직 및 이와 유사한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8.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수직의 태피스트리(예:퍼티포인트·십자수) 및 이와 유사한 자수의 태피스트리(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00		58.06	세폭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착시킨 경사만으로 이루어진 세폭직물(블덕)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8.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01		58.07	섬유제의 레이블, 배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원단상, 스트립 또는 특정의 형상이나 크기로 절단한 것에 한하며 자수한 것을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8.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02		58.08	원단상의 브레이드와 원단상의 장식용 트리밍(자수가 없는 것에 한하며 메리야스 편직 또는 뜨개질 편직의 것을 제외한다) 및 슬, 폼폼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8.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03		58.09	제5605호에 해당하는 금속사와 금속드리사를 사용한 직물(의류·실내용품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것에 한하며, 다른 호에 계기한 것이나 포함되는 것은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8.0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04		58.10	자수포(원단상, 스트립 또는 모티프로 된 것에 한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8.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05		58.11	원단상의 방직용 누비제품(바느질 또는 기타 방법으로 패딩과 조합한 한 층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제5810호의 자수포를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58.1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 59류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의 방직용 섬유제품	
306		59.01	서적 장정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겹 또는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트레이싱포, 회화용 캔버스와 모자 제조용에 사용되는 버크립 및 이와 유사한 경화가공된 방직용 섬유의 직물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9.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07		59.02	강력사의 타이어코드직물(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폴리에스테르 및 비스코스레이온의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9.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08		59.03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9.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를 제외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09	59.04		리놀륨과 방직용 섬유직물의 뒷면에 도포 또는 피복된 것으로 만든 바닥갈개(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9.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10	59.05		방직용 섬유제의 벽 피복재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9.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11	59.06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를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9.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12	59.07		기타의 방법으로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또는 스튜디오용의 배경막 또는 이와 유사한 그림을 그린 직물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9.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13	59.08		램프용·스토브용·라이터용·양초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심지(직조·편조 또는 편직된 것에 한한다)와 백열가스 맨틀 및 백열가스 맨틀용 관상편물(침투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9.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14	59.09		방직용 섬유제의 호스 및 이와 유사한 관상의 물품(다른 재료로 내장 또는 보강한 것과 부속품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9.0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15	59.10		전동용과 콘베이어용 벨트와 벨팅(방직용 섬유제의 것에 한하며,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 금속 또는 기타의 물품으로 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9.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16	59.11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이 류의 주 7에 계기 한 공업용의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9.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 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317	61.01		남자 또는 소년용의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클룩·아노락(스키자켓을 포함한다)·윈드치터·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및 뜨개질 편물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1.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에 한하며, 제6103호의 것을 제외한다)	
318	61.02	여자 또는 소녀용의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클룩·아노락(스키 자켓을 포함한다)·윈드치터·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및 뜨게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제6104호의 것을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1.02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19	61.03	남자 또는 소년용의 슈트·양상블·자켓·블레이저·긴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수영복을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1.03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20	61.04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양상블·자켓·블레이저·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수영복을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1.04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21	61.05	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1.05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22	61.06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브라우스·셔츠 및 셔츠브라우스(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1.06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23	61.07	남자 또는 소년용의 언더팬츠·브리프·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까운·드레싱까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1.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24	61.08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슬립·패티코트·브리프·팬티·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그리제·목욕용까운·드레싱까운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1.08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25	61.09	티셔츠·싱글리트 및 기타 조끼(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1.09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	

					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26		61.10	저지·폴오버·가디건·웨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1.1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27		61.11	유아용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1.1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28		61.12	트랙슈트·스키슈트 및 수영복(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1.12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29		61.13	의류(제5903호·제5906호 또는 제5907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로 만든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1.13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30		61.14	기타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1.14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31		61.15	팬티호스·타이즈·스타킹 및 기타 양말류(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의 스타킹)와 바닥을 대지 아니한 신발류를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1.15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32		61.16	장갑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1.16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33		61.17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제의 의류부속품과 의류 및 의류부속품의 부분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1.17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제 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		

			물 또는 뜨게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	
334	62.01	남자 또는 소년용의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클룩·아노락(스키 자켓을 포함한다)·윈드치터·윈드 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제 6203호의 것을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2.0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35	62.02	여자 또는 소녀용의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클룩·아노락(스키 자켓을 포함한다)·윈드치터·윈드 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제 6104호의 것을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2.02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36	62.03	남자 또는 소년용의 슈트·양상 블·자켓·블레이저·긴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바지(수영복을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2.03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37	62.04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양상 블·자켓·블레이저·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바지(수영복을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2.04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38	62.05	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2.05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39	62.06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브라우스·셔츠 및 셔츠 브라우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2.06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에 한한다.	
340	62.07	남자 또는 소년용의 싱글리트와 기타 조끼·언더팬츠·브리프·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까운·드레싱까운 및 이와 유사한 의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2.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41	62.08	여자 또는 소녀용의 싱글리트와 기타 조끼·슬립·패티코트·브리프·팬티·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그리제·목욕용 까운·드레싱까운 및 이와 유사한 의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2.08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42	62.09	유아용 의류 및 부속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2.09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43	62.10	의류(제5602호, 제5603호, 제5903호, 제5906호 또는 제5907호의 직물류의 제품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2.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44	62.11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 및 기타 의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2.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45	62.12	브래지어·거들·콜셋·브레이스·서스펜더·가아터 및 이와 유사한 제품과 이들의 부분품(메리야스 편물제인지 또는 뜨게질 편물제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2.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46	62.13	손수건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2.1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50.07호, 제51.11호 내지 제51.13호, 제52.08에서 제52.12호, 제53.09호 내지 제53.11호, 제54.07호 내지 제54.08호, 제55.12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제60.01호 내지 제60.06호에 해당하는 직물은 원산지 상품이며, 그 상품은 수입국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47	62.14	쇼울·스카프·머플러·만틸라·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2.1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50.07호, 제51.11호 내지 제51.13호, 제52.08 내지 제52.12호, 제53.09호 내지 제53.11호, 제54.07호 내지 제54.08호, 제55.12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제60.01호 내지 제60.06호에 해당하는 직물은 원산지 상품이며, 그 상품은 수입국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48	62.15	넥타이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2.1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49	62.16	장갑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2.1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50	62.17	기타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 및 의류 또는 의류부속품의 부분품(제6212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2.1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제 63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 기타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사용하던 방직용 섬유제품 및 넘마		
351	63.01	모포류와 여행용 리그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3.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50.07호, 제51.11호 내지 제 51.13호, 제52.08 내지 제52.12호, 제 53.09호 내지 제 53.11호, 제54.07호 내지 제54.08호, 제55.12호 내지 제 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제 60.01호 내지 제60.06호에 해당하는 직물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 상품인 것에 한하며, 그 상품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52	63.02	베드린넨·데이블린넨·토일렛린넨 및 주방린넨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3.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50.07호, 제51.11호 내지 제 51.13호, 제52.08 내지 제52.12호, 제 53.09호 내지 제 53.11호, 제54.07호 내지 제54.08호, 제55.12호 내지 제 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제 60.01호 내지 제60.06호에 해당하는 직물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 상품인 것에 한하며, 그 상품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53	63.03	커튼(드레이프를 포함한다)·실내용 브라인드 및 커튼 또는 칩대용 밸런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3.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50.07호, 제51.11호 내지 제 51.13호, 제52.08 내지 제52.12호, 제 53.09호 내지 제 53.11호, 제54.07호 내지 제54.08호, 제55.12호 내지 제 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제

				60.01호 내지 제60.06호에 해당하는 직물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 상품인 것에 한하며, 그 상품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54		63.04	기타 실내용품(제9404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3.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50.07호, 제51.11호 내지 제51.13호, 제52.08 내지 제52.12호, 제53.09호 내지 제 53.11호, 제54.07호 내지 제54.08호, 제55.12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제60.01호 내지 제60.06호에 해당하는 직물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 상품인 것에 한하며, 그 상품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55		63.05	포장용의 빈 포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3.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50.07호, 제51.11호 내지 제51.13호, 제52.08 내지 제52.12호, 제53.09호 내지 제 53.11호, 제54.07호 내지 제54.08호, 제55.12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제60.01호 내지 제60.06호에 해당하는 직물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 상품인 것에 한하며, 그 상품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56		63.06	타포린·천막·차양·텐트·돛 및 캡 프용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3.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50.07호, 제51.11호 내지 제51.13호, 제52.08 내지 제52.12호, 제53.09호 내지 제 53.11호, 제54.07호 내지 제54.08호, 제55.12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제60.01호 내지 제60.06호에 해당하는 직물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 상품인 것에 한하며, 그 상품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57		63.07	기타의 제품(드레스퍼턴을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3.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50.07호, 제51.11호 내지 제51.13호, 제52.08 내지 제52.12호, 제53.09호 내지 제 53.11호, 제54.07호 내지 제54.08호, 제55.12호 내지 제

				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제60.01호 내지 제60.06호에 해당하는 직물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 상품인 것에 한하며, 그 상품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58		63.08	러그·태피스트리·자수한 테이블보 또는 서비에트용 직물 및 실로 구성된 세트(부속품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3.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 다만 제50.07호, 제51.11호 내지 제51.13호, 제52.08 내지 제52.12호, 제53.09호 내지 제 53.11호, 제54.07호 내지 제54.08호, 제55.12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제60.01호 내지 제60.06호에 해당하는 직물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 상품인 것에 한하며, 그 상품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59		63.09	사용하던 의류 및 기타 사용하던 제품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360		63.10	닝마(사용하던 것 또는 신문의 것) 및 끈·코디지·로프 또는 케이블의 스크랩과 끈·코디지·로프 또는 케이블제품의 폐품(방직용 섬유제의 것에 한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제13부 - 석·플라스틱·시멘트·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				
제 68류				
		68.02	석·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가공한 비석용 또는 건축용의 석재(슬레이트를 제외한다)와 이들의 제품(제6801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모자이크 큐브 및 이와 유사한 것(천연석재의 것으로서 슬레이트 제품을 포함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천연석재(슬레이트를 포함한다)의 입·세편 및 분	
			- 기타	
361		6802.91	-- 대리석·트래버틴 및 엘러바스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802.9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68.11	석면시멘트 제품·셀룰로스파이버시멘트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362		6811.40	- 석면을 함유한 것	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기타 슈트·패널·타일 및 이와 유사한 제품

					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기타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 석면을 함유하지 않은 것	
363			6811.82	- 기타 슈트·판넬·타일 및 이와 유사한 제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811.82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14부 -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과 주화					
	제 71류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과 주화	
364		71.01		천연 또는 양식진주(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실로 쥬얼 것, 장착 또는 세트된 것을 제외한다. 다만,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쥬얼 것을 포함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71.02		다이아몬드(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장착 또는 세트된 것을 제외한다)	
365			7102.10	- 선별하지 아니한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7102.1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 공업용의 것	
366			7102.21	-- 원석, 단순히 톱질한 것 또는 쪼갠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7102.2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67			7102.29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7102.29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 공업용이 아닌 것	
368			7102.31	-- 원석, 단순히 톱질한 것 또는 쪼갠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7102.3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69			7102.39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7102.39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71.03	귀석(다이아몬드를 제외한다)과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실로 켜진 것, 장착 또는 세트된 것을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켜진 것을 포함한다)	
370		7103.10	- 원석 또는 단순히 톱질한 것 또는 거칠게 성형한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7103.1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 기타 다른 방법으로 가공한 것	
371		7103.91	-- 루비·사파이어 및 에메랄드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7103.9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72		7103.99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7103.99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71.04	합성 또는 재생의 귀석 또는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실로 켜진 것, 장착 또는 세트된 것을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켜진 것을 포함한다)	
373		7104.10	- 압전기용 석영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7104.1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74		7104.20	- 기타(원석, 단순히 톱질한 것 또는 거칠게 성형한 것에 한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7104.2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75		7104.90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7104.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71.05	천연 또는 합성의 귀석 또는 반귀석의 더스트와 분	
376		7105.90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7105.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71.13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귀금속제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에 한한다)	

				- 귀금속제의 것(귀금속을 도금 또는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77			7113.11	-- 은제의 것(기타의 귀금속을 도금 또는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7113.1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78			7113.20	-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제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7113.2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71.14		금세공품 또는 은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귀금속제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에 한한다)	
				- 귀금속제의 것(귀금속을 도금 또는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79			7114.11	-- 은제의 것(기타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7114.1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80			7114.20	- 귀금속을 입힌 비(卑)금속제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7114.2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71.15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기타 제품	
381			7115.90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7115.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71.16		천연 또는 양식진주,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에 한한다)의 제품	
382			7116.10	- 천연 또는 양식진주제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7116.1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83			7116.20	-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제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7116.2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71.17		모조신변장식용품	
				- 비금속제의 것(귀금속을 도금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84			7117.11	-- 커프링크 및 장식용단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7117.1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85			7117.90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7117.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

				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15부 - 비금속과 그 제품				
제 72류				
			철강	
386		72.09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이상인 것으로서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에 한하며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을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2.09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2.20	스테인레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미만인 것에 한한다)	
			-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387		7220.11	-- 두께가 4.75밀리미터이상의 것	제72.19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7220.1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88		7220.12	-- 두께가 4.75밀리미터미만의 것	제72.19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7220.12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 74류				
동과 그 제품				
389		74.08	동의 선	제 74.07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74.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90		74.13	동제의 연선·케이블·얇은 밴드 및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을 제외한다)	제 74.07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74.13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 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391		76.05	알루미늄의 선	제 76.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76.05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92		76.14	알루미늄제의 연선·케이블·얇은 밴드 및 이와 유사한 것(전기절연한 것을 제외한다)	제 76.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76.14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 81류				
			기타 비금속, 서메트, 이들의 제품	
		81.04	마그네슘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393		8104.30	- 크기에 따라 등급을 매긴 줄 밧·연삭설 및 입, 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104.3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 83류			비금속제의 각종 제품	
		83.05		비금속제의 서류철용 피팅·서신용 클립·레터코너·서류용 클립·색인용 택 및 이와 유사한 비금속제의 사무용품, 비금속제의 대상의 스테이플(예:사무실용·가구류용·포장용의 것)	
394			8305.10	- 서류철용 피팅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305.1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95			8305.20	- 대상의 스테이플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305.2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96			8305.90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305.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16부 -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향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 84류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84.15		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의 팬과 온도 및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에 한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	
397			8415.10	- 창문형 또는 벽형의 것(자장식의 것 또는 분리형의 것에 한한다)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84.79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 기타의 기기	
398			8479.81	-- 금속처리용의 것(전선권선기를 포함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479.8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99			8479.89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479.89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84.82		볼 베어링 또는 로울러 베어링	
400			8482.10	- 볼 베어링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482.1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84.86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	

				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	
401			8486.10	- 보울 또는 웨이퍼 제조용 기계와 기기	같은 소호내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486.1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02			8486.20	- 반도체 디바이스 또는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같은 소호내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486.2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03			8486.30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	같은 소호내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486.3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04			8486.40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같은 소호내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486.4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 85류			전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85.04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정류기)와 유도자	
405			8504.50	- 기타의 유도자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504.5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인 것
		85.08		진공청소기	
				- 전동기를 자장한 것	
406			8508.19	-- 기타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가정용 진공청소기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기타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07			8508.60	- 기타 진공청소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508.6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85.17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	

			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 제8525호, 제8527호 또는 제8528호의 송신 또는 수신용의 기기를 제외한다)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408		8517.12	- 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517.12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에 위한 기기(근거리통신망 또는 원거리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409		8517.61	-기지국	가. 제 8517.61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송신기기가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 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기타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10		8517.62	-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수신, 변환 및 송신 또는 재생하기 위한 기기(교환기 및 라우팅기기를 포함한다)	가. 제 8517.62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송신기기가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 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기타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11		8517.70	- 부분품	같은 소호내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517.70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85.18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마이크로폰과 1개이상의 확성기로 구성	

				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및 음향증폭세트	
412			8518.30	-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마이크로폰과 1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518.3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13			8518.50	- 음향증폭세트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518.5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85.19		음성 녹음 또는 재생 기기	
414			8519.30	- 턴 테이블(레코드 데크)	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레코드판 자동교환 기능을 갖춘 턴 테이블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기타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85.22		제8519호 및 제8521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품품과 부속품	
415			8522.90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522.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85.23		디스크·테이프·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 또는 기타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기록 여부를 불문하고, 디스크의 제조용의 매트릭과 마스터를 포함하되, 제37류의 물품을 제외한다)	
416			8523.52	-- 스마트카드	같은 소호내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523.52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85.25		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	
417			8525.60	-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525.6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

					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85.28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음성기록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 방송수신기, 음성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18			8528.71	-- 영상디스플레이 또는 스크린을 갖추지 아니한 것	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텔레비전 천연색 수신용의 기기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기타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19			8528.72	-- 기타(천연색의 것에 한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528.72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85.29		부분품(제8525호 및 제8528호에 개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420			8529.90	- 기타	같은 소호내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529.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85.32		고정식·가변식 또는 조정식(프리셋) 축전기	
				- 기타의 고정식 축전기	
421			8532.22	-- 알루미늄 전해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532.22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85.36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	
423			8536.10	- 퓨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536.1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

					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인 것
		85.39		필라멘트램프 또는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니트와 자외선램프 또는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와 아크램프	
				- 기타의 필라멘트 램프(자외선 램프 또는 적외선램프를 제외한다)	
424			8539.21	-- 텅스텐 할로겐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539.2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 방전램프(자외선램프를 제외한다)	
425			8539.31	-- 형광램프(열 음극형의 것에 한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539.3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26			8539.90	- 부분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539.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85.40		열전자관·냉음극관 또는 광전관(예:진공관·증기 또는 가스를 봉입한 관·수은아크정류관·음극선관·텔레비전용 촬상관)	
427			8540.20	- 텔레비전용 촬상관·영상변환관과 영상증강관 및 기타의 광전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540.2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28			8540.40	- 데이터/그래픽 직시관(천연색의 것으로서 인광물질 도트화면간격이 0.4밀리미터미만의 것에 한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540.4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29			8540.60	- 기타의 음극선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540.6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 마이크로웨이브관(예:자전관·속도변조관·진행파관·카시노트론) 단, 그리드제어관을 제외한다.	
430			8540.71	-- 자전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540.7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인 것
431			8540.72	-- 속도변조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540.72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 기타의 관	
432			8540.89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540.89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 기타	
433			8540.91	-- 음극선관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540.9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85.41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434			8541.90	- 부분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541.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85.43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435			8543.70	-- 기타의 기기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일렉트릭 펜스 에너지저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기타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 87류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87.02		10인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의 자동차	
436			8702.10	-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 기관(디젤 또는 세미디젤)의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437			8702.90	- 기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87.0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량(제8702호의 것을 제외하며, 스테이션웨곤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 기타의 차량(불꽃점화식의 왕복식 피스톤 내연 기관의 것에 한한다)	
438			8703.21	-- 실린더용량 1,000CC 이하의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439		8703.22	-- 실린더용량 1,000시이시이하 과 1,500시이시이하의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 격의 45%이상일 것
440		8703.23	-- 실린더용량 1,500시이시이하 과 3,000시이시이하의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 격의 45%이상일 것
441		8703.24	-- 실린더용량 3,000시이시 초 과의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 격의 45%이상일 것
			- 기타의 차량(압축점화식의 피 스톤 내연기관(디젤 또는 세미 디젤의 것에 한한다)	
442		8703.31	-- 실린더용량 1,500시이시이하 의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 격의 45%이상일 것
443		8703.32	-- 실린더용량 1,500시이시이하 과 2,500시이시이하의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 격의 45%이상일 것
444		8703.33	-- 실린더용량 2,500시이시 초 과의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 격의 45%이상일 것
445		8703.90	- 기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 격의 45%이상일 것
		87.04	화물자동차	
446		8704.10	-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 계제작된 것에 한한다)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 격의 45%이상일 것
			- 기타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 또는 세미디젤) 의 것	
447		8704.21	-- 총중량 5톤이하의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 격의 45%이상일 것
448		8704.22	-- 총중량 5톤초과 20톤이하의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 격의 45%이상일 것
449		8704.23	-- 총중량 20톤초과의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 격의 45%이상일 것
			- 기타(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에 한한다)	
450		8704.31	-- 총중량 5톤이하의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 격의 45%이상일 것
451		8704.32	-- 총중량 5톤 초과 의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 격의 45%이상일 것
452		8704.90	- 기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 격의 45%이상일 것
		87.08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및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 다)	
453		8708.40	- 기어박스 와 그 부분품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기어 박스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 인 것 나. 부분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 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인 것
454		8708.50	-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 (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비구동 차축 및 그 부분품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차동 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 및 비구동 차 축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나. 부분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 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인 것
456		8708.80	- 서스펜션 시스템과 그 부분품 (쇼크업소버를 포함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서스펜션 시스템(쇼크업소버를 포함)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나. 부분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 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인 것
			-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	
457		8708.91	- 방열기와 그 부분품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방열기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나. 부분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 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인 것
458		8708.92	- 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 및 그 부분품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나. 부분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 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인 것
459		8708.94	-- 핸들·운전대 및 운전박스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460		8708.95	- 팽창 시스템을 갖춘 안전 에어백과 그 부분품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461		8708.99	-- 기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462		87.11	모터사이클(모페드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및 사이드카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제 89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89.07	기타의 물에 뜨는 구조물(예:부교·탱크·코오퍼뎀·부잔교·부표·수로부표)	
463		8907.10	- 인플랫터블식의 부교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8907.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50%이상인 것
제18부 -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시계와 악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 90류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0.02		각종 재료제의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을 제외한다)	
				- 대물렌즈	
464			9002.11	-- 카메라용·영사기용·사진 확대기 또는 사진축소기용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9002.1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65			9002.19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9002.19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66			9002.20	- 필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9002.2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67			9002.90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9002.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20부 - 잡품					
	제 94류			가구와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서포트·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조립식 건축물	
		94.03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	
468			9403.30	- 사무실용 목제가구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60%이상일 것
469			9403.40	- 주방용 목제가구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60%이상일 것
470			9403.50	- 침실용 목제가구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60%이상일 것
471			9403.60	- 기타의 목제가구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60%이상일 것